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3. 대상기관 : 73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6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여성보호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 복지정책실 소관(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66개)
	<p>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p> <p>○ 시민건강국 소관(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국 민 의 힘	강 석 주	수석전문위원 : 박지향 행정 5 급 : 황동연 전문위원 : 이일우
부위원장	국 민 의 힘	유 만 희	행정 6 급 : 이병운 사무운영7급 : 심선영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소 라	행정 7 급 : 이준혁 행정 7 급 : 손은영
위 원	국 민 의 힘	김 영 옥	입법조사관 : 이정화
”	국 민 의 힘	윤 영 희	입법조사관 : 이윤진
”	국 민 의 힘	최 호 정	입법조사관 : 우현재
”	국 민 의 힘	황 유 정	입법조사관 : 도미화
”	더불어민주당	김 경	입법조사관 : 김종훈
”	더불어민주당	최 기 찬	입법지원관 : 이소민
			입법지원관 : 송선영
			정책지원관 : 박서영
			정책지원관 : 김지혜
			정책지원관 : 이윤희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2(수) 10:00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위원회 회의실	
11.3(목) 10:00	<복지 관련 기관>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11.4(금)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7(월) 10:00	<p>〈여성가족 관련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능력개발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부여성발전센터 - 남부여성발전센터 - 북부여성발전센터 - 중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여성보호센터 -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영보자애원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8(화) 10:00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11.9(수)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10(목) 10:00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위원회 회의실	
11.11(금)	〈현지 행정사무감사〉 - 오전 : 고양정신병원 - 오후 : 보라매병원		
11.14(월) 10:00	〈서울의료원〉 〈직영 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탁 병원〉 -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건강 관련 기관〉 -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위원회 회의실	
11.15(화)	감사결과 정리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현황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복지정책실 및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정책실 및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여성 사회참여 증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저출생 해소, 보육 및 돌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아동·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성평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재단 및 여성능력 개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관련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류, 여성복지 증진, 여성 관련 시설 연계, 여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여성일자리 활성화 및 일자리기관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 위탁시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시민 보건 수준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 연구원	"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공공보건 의료재단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 관련 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서 울 의 료 원	"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위탁병원	"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가. 2021. 11월 ~ 2022.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각종 기금 포함)
- 다.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각종 기금 포함)
- 라. 2021. 11월 ~ 2022. 10월까지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마. 2021. 11월 ~ 2022. 10월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각급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 바.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사.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아. 보건복지위원회 요구 자료
- 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8.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2」 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감사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2022. 9. 30.(금)까지 제출
- 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22.10.4(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감사 개시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
 - 행정사무감사 전체 피감기관의 기관(시설)장
 -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운영 법인 대표 : 선정 중
- (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예시)

-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 선서 : 선서문 별첨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업무현황 보고·청취
-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6) 현지확인, 서류제출 등의 요구 및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1) 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 (3)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2.12.7.(수)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 (5) 본회의 의결

-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감사 결과 의견서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